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1나6114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의청

변 론 종 결 2022. 4. 7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가소43259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0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C 신길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고, 피고는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이주비 36,100,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다.

나. 원고는 2020. 10. 19. 피고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으면서 10,000원 권 지폐 2,000매, 50,000원 권 지폐 22매, 1,000,000원 권 수표 5매 합계 26,100,000원을 교부받았으나, 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36,1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다. 원고는 같은 날 시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10,000,000원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, 피고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10,000,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0. 10. 30. 부족한 시재를 메꾸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신길중앙지점에 1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지출로 인하여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10,000,000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,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0,000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부당이득반환의 범위

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,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

한다(민법 제748조).

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으면서 돈을 교부받는 시점을 전후로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50,000원 권 지폐 묶음을 건네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,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을 의뢰하면서 돈을 교부할 당시 50,000원 권 지폐 묶음을 덜 교부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원고는 피고의 송금의뢰를 받아 송금을 한 당일 시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10,000,000원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10,000,000원의 반환을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인 2020. 10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. 12. 3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병훈, 판사 이서윤, 판사 조약돌